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제 1 호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존립기간 이후의 잔여재산분배금지급 시점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5 월 14 일

4. 대비표

[신탁계약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1 조(주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회사는 회사의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법제30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주식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은	①회사는 회사의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주식을 전자등록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고객(이하 "투자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2.주식의 종류 및 수 ③(삭제)

	그 기재시에 법 제3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예탁 주권을 점유하며, 예탁 주식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 12 조(예탁 주권의 교부)	(생략)	(삭제)
제 13 조(주권의 재교부)	(생략)	(삭제)
제 14 조(주식의 양도)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②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주식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①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자기주식의 취득 제한 등)	②(생략) 1. 주식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각 3. 제3자에의 직접 매각	②(생략)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각 3. 제3자에의 직접 매각
제 22 조(주식의 소각)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식의 소각시기는 매수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날의 24시로 본다.	(삭제)
제 23 조(명의개서대리인 등)	③주주와 등록질권자 및 그들의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⑤(생략)	③(삭제) ④~⑤ (종전과 동일)

	⑥제3항 내지 제5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⑥제4항 또는 제5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24 조(주주명부)	①~②(생략) ③한국예탁결제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주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실질주주가 보유한 주권의 종류 및 수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주주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주주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①~②(종전과 동일) ③한국예탁결제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주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주주가 보유한 주권의 종류 및 수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삭제)
제45조(투자대상 등)	①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서 허용된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①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서 허용된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제58조(존립기간 이후의 잔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회

여재산분배금 지급)	음 각 호의 시점에 회사 자산 중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잔여재산분배금"이라 한다)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판매회사에 인도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잔여재산분배금을 지체없이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존립기간 만료일 2. 존립기간 만료후 잔여재산의 회수 또는 환가에 따른 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날	사 자산 중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잔여재산분배금"이라 한다)을 채권자에 대한 최고 및 변제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청산 절차를 완료한 이후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날에 신탁업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판매회사에 인도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잔여재산분배금을 지체 없이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62조(정관의 변경)	<신설>	⑥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 6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주주는 제 55 조와는 별도로 투자회사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회사재산에서 인출한다. 단,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상금액: 제55조3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회사 순자산총액 *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 2. 대상기간: 변경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단, 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존립기간 종료일까지의 존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존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3. 지급시기: 이 투자회사의 정관의 변경 시행일

		⑧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7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에 따른 변경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증권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에 따른 변경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5 월 14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 존립기간 이후의 잔여재산분배금지급 시점 변경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존립기간 이후의 잔여재산분배금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점에 회사 자산 중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잔여재산분배금"이라 한다)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판매회사에 인도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잔여재산분배금을 지체없이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존립기간 만료일 2. 존립기간 만료후 잔여재산의 회수 또는 환가에 따른 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날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6 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회사 자산 중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잔여재산분배금"이라 한다)을 채권자에 대한 최고 및 변제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청산 절차를 완료한 이후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날에 신탁업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판매회사에 인도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잔여재산분배금을 지체 없이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제 2 호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존립기간 이후의 잔여재산분배금지급 시점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5 월 14 일

4. 대비표

[신탁계약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1 조(주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회사는 회사의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법제30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주식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은	①회사는 회사의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주식을 전자등록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고객(이하 "투자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2.주식의 종류 및 수 ③(삭제)

	그 기재시에 법 제3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예탁 주권을 점유하며, 예탁 주식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 12 조(예탁 주권의 교부)	(생략)	(삭제)
제 13 조(주권의 재교부)	(생략)	(삭제)
제 14 조(주식의 양도)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②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주식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①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자기주식의 취득 제한 등)	②(생략) 1. 주식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각 3. 제3자에의 직접 매각	②(생략)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각 3. 제3자에의 직접 매각
제 22 조(주식의 소각)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식의 소각시기는 매수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날의 24시로 본다.	(삭제)
제 23 조(명의개서대리인 등)	③주주와 등록질권자 및 그들의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⑤(생략)	③(삭제) ④~⑤ (종전과 동일)

	⑥제3항 내지 제5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⑥제4항 또는 제5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24 조(주주명부)	①~②(생략) ③한국예탁결제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주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실질주주가 보유한 주권의 종류 및 수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주주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주주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①~②(종전과 동일) ③한국예탁결제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주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주주가 보유한 주권의 종류 및 수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삭제)
제45조(투자대상 등)	①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서 허용된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①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서 허용된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제58조(존립기간 이후의 잔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회

여재산분배금 지급)	음 각 호의 시점에 회사 자산 중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잔여재산분배금"이라 한다)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판매회사에 인도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잔여재산분배금을 지체없이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존립기간 만료일 2. 존립기간 만료후 잔여재산의 회수 또는 환가에 따른 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날	사 자산 중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잔여재산분배금"이라 한다)을 채권자에 대한 최고 및 변제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청산 절차를 완료한 이후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날에 신탁업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판매회사에 인도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잔여재산분배금을 지체 없이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62조(정관의 변경)	<신설>	⑥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 6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주주는 제 55 조와는 별도로 투자회사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회사재산에서 인출한다. 단,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상금액: 제55조3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회사 순자산총액 *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 2. 대상기간: 변경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단, 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존립기간 종료일까지의 존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존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3. 지급시기: 이 투자회사의 정관의 변경 시행일

		⑧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7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에 따른 변경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증권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에 따른 변경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5 월 14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 존립기간 이후의 잔여재산분배금지급 시점 변경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존립기간 이후의 잔여재산분배금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점에 회사 자산 중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잔여재산분배금"이라 한다)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판매회사에 인도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잔여재산분배금을 지체없이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존립기간 만료일 2. 존립기간 만료후 잔여재산의 회수 또는 환가에 따른 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날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6 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회사 자산 중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잔여재산분배금"이라 한다)을 채권자에 대한 최고 및 변제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청산 절차를 완료한 이후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날에 신탁업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판매회사에 인도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잔여재산분배금을 지체 없이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파워 1.5 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 주요 변경내용

- 종류 A-E, C-P, C-PE, AG, CG, S 수익증권 신설
- 종류 C-E, C-I 판매보수 인하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5 월 14 일

4. 대비표

[신탁계약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 13. <신설>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현행과 동일) 8.종류 A-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이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9.종류 C-P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0.종류 C-P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1.종류 A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12.종류 C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13.종류 S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생략) 1. ~ 7. (생략) 8. ~ 13. <신설>	① (현행과 동일) 1. ~ 7. (현행과 동일) 8.종류 A-E 수익증권 9.종류 C-P 수익증권 10.종류 C-PE 수익증권 11.종류 AG 수익증권 12.종류 CG 수익증권 13.종류 S 수익증권
제 39 조(투자신탁보수	③ (생략) [종류 A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5.6 2. 판매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2.4 3. 신탁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종류 A-U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5.6 2. 판매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3.4 3. 신탁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0.3	③ (현행과 동일) [종류 A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5.6 2. 판매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2.4 3. 신탁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종류 A-U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5.6 2. 판매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3.4 3. 신탁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종류 C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5.6 2. 판매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10.0 3. 신탁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종류 C-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5.6 2. 판매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7.4 3. 신탁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종류 C-F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5.6 2. 판매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3 3. 신탁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종류 C-I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5.6 2. 판매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5.4 3. 신탁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종류 C-W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5.6 2. 판매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0 3. 신탁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종류 C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5.6 2. 판매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10.0 3. 신탁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종류 C-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5.6 2. 판매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5.0 3. 신탁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종류 C-F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5.6 2. 판매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3 3. 신탁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종류 C-I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5.6 2. 판매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2.0 3. 신탁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종류 C-W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5.6 2. 판매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0 3. 신탁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신설>	0.18 [종류 A-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5.6 2. 판매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1.2 3. 신탁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종류 C-P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5.6 2. 판매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5.5 3. 신탁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종류 C-P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5.6 2. 판매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2.75 3. 신탁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종류 AG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5.6 2. 판매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1.56 3. 신탁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종류 CG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5.6 2. 판매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6.5 3. 신탁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종류 S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5.6 2. 판매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1.0 3. 신탁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제 40 조(판매수수료)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A-U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 이내 <신설> ③ (생략) <신설>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A-U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 이내 2. 종류 A-E, 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0% 이내 ③ (현행과 동일) ④판매회사는 종류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 3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을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S 후취판매수수료 : 3 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⑥제 5 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 5 항 1 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 44 조(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①~③ (생략) <신설>	①~③ (현행과 동일)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단,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상금액: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 대상기간: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 단,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3. 지급시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A-E 클래스 신설>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348	0.740	1.04

운용전문인력

(생략)

과세

<신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신설>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0.728	0.120	0.59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108	0.500	1.04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과세

<신설>

-연금저축계좌의 세제(Class C-P, C-PE 수익자에 한함)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판매경로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설>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A-E 수수료선취-온라인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설>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A-E 수수료선취-온라인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5 월 14 일 - 종류 A-E, C-P, C-PE, AG, CG, S 수익증권 신설 - 종류 C-E, C-I 판매보수 인하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신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판매경로** /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td><td></td><td>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 rowspan="2">기타</td><td>무권유 저비용(G)</td><td>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개인연금 (P)</td><td>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able>
</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2) 종류별 가입자격
<table>
<tr><th>구분</th><th>가입자격</th></tr>
<tr><td>종류 A-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이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
<tr><td>종류 C-P</td><td>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r><td>종류 C-P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r><td>종류 A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
<tr><td>종류 C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r><td>종류 S</td><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td><td></td><td></td><td>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신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table><tr><th colspan="2">종류형 명칭</th><th>집합투자업자 보수</th><th>판매회사보수</th><th>수탁회사보수</th><th>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th><th>총 보수</th></tr><tr><td>C-E</td><td>수수료미징구-온라인</td><td>0.560</td><td>0.740</td><td>0.030</td><td>0.018</td><td>1.348</td></tr><tr><td>C-I</td><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td><td>0.560</td><td>0.540</td><td>0.030</td><td>0.018</td><td>1.148</td></tr></table>
<신설></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table><tr><th colspan="2">종류형 명칭</th><th>선취판매수수료</th><th>후취판매수수료</th><th>환매수수료</th></tr><tr><td>A-E</td><td>수수료선취-온라인</td><td>납임금액의 0.5% 이내</td><td rowspan="6">없음</td><td rowspan="6">없음</td></tr><tr><td>C-P</td><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td><td>없음</td></tr><tr><td>C-PE</td><td>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td><td>없음</td></tr><tr><td>AG</td><td>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td><td>납임금액의 0.5% 이내</td></tr><tr><td>CG</td><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td><td>없음</td></tr><tr><td>S</td><td>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td><td>없음</td><td>3 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td></tr></table>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table><tr><th colspan="2">종류형 명칭</th><th>집합투자업자 보수</th><th>판매회사보수</th><th>수탁회사보수</th><th>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th><th>총 보수</th></tr><tr><td>C-E</td><td>수수료미징구-온라인</td><td>0.560</td><td>0.500</td><td>0.030</td><td>0.018</td><td>1.108</td></tr><tr><td>C-I</td><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td><td>0.560</td><td>0.200</td><td>0.030</td><td>0.018</td><td>0.808</td></tr></table>
<table><tr><th colspan="2">종류형 명칭</th><th>집합투자업자</th><th>판매회사보수</th><th>수탁회사보수</th><th>일반사무관리회사</th><th>총 보수</th></tr></table></td></tr>
</table>

		보수			보수	
A-E	수수료 선취-온라인	0.560	0.120	0.030	0.018	**0.728**
C-P	수수료 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0.560	0.550	0.030	0.018	**1.158**
C-PE	수수료 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0.560	0.275	0.030	0.018	**0.883**
AG	수수료 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0.560	0.156	0.030	0.018	**0.764**
CG	수수료 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0.560	0.650	0.030	0.018	**1.258**
S	수수료 후취-온라인슈퍼	0.560	0.100	0.030	0.018	**0.708**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신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종류형	명칭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A-E	수수료 선취-온라인	124	202	284	460	984
C-P	수수료 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119	243	374	656	1,493
C-PE	수수료 미징구-온라인-개인연	90	186	285	500	1,138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td><td>금</td><td></td><td></td><td></td><td></td><td></td></tr>
<tr><td>AG</td><td>수수료 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td><td>128</td><td>210</td><td>296</td><td>480</td><td>1,030</td></tr>
<tr><td>CG</td><td>수수료 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td><td>129</td><td>264</td><td>406</td><td>712</td><td>1,622</td></tr>
<tr><td>S</td><td>수수료 후취-온라인 슈퍼</td><td>73</td><td>149</td><td>229</td><td>401</td><td>913</td></tr>
</table>
</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신설></td><td>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6)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C-PE 수익증권 가입자</td></tr>
<tr><td>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td><td>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td><td>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td></tr>
</table>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글로벌리츠온리원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변경 적용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5 월 14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과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9.9%(소득세 9%, 지방소득세 0.9%)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10.4%(소득세 9%, 지방소득세 0.9%, 농어촌특별세 0.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5 월 14 일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변경 적용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변경 전 1]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변경 후 1]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경 전 1]

(6)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10.4%(소득세 9%, 지방소득세 0.9%, 농어촌특별세 0.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29 조 제 2 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동 법 제 9 조제 19 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49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투자(투자대기자금의 일시적인 운용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 9 조제 19 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49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 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 1 항을 적용받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 1 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변경 후 1]

(6)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
대상자	세법상 거주자
가입기간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2020년 1월 1일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9조])
계약기간	**3년 이상**
가입한도	**1인당 투자금액 합계액 5천만원**
대상펀드	1.「자본시장법」제 229 조제 2 호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2.「부동산투자회사법」제 49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자본시장법」제9조제18항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및「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세제혜택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 적용(지방소득세 포함 9.9%)**
세제혜택 방법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투자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감면세액 추징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각 집합투자증권 투자일부터 3 년이 되는 날 이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투자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투자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특별해지)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2.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거주자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다. 공모부동산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라.「자본시장법 시행령」제 223 조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특별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여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 81 조의 4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글로벌리츠온리원분기지급형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변경 적용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0 년 05 월 14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과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9.9%(소득세 9%, 지방소득세 0.9%)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10.4%(소득세 9%, 지방소득세 0.9%, 농어촌특별세 0.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0 년 05 월 14 일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변경 적용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변경 전 1]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변경 후 1]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경 전 1]

(6)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10.4%(소득세 9%, 지방소득세 0.9%, 농어촌특별세 0.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29 조 제 2 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동 법 제 9 조제 19 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49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투자(투자대기자금의 일시적인 운용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 9 조제 19 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49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 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 1 항을 적용받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 1 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변경 후 1]

(6)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
대상자	세법상 거주자
가입기간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2020년 1월 1일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9조])
계약기간	**3년 이상**
가입한도	**1인당 투자금액 합계액 5천만원**
대상펀드	1.「자본시장법」제 229 조제 2 호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2.「부동산투자회사법」제 49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자본시장법」제9조제18항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및「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세제혜택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 적용(지방소득세 포함 9.9%)**
세제혜택 방법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투자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감면세액 추징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각 집합투자증권 투자일부터 3 년이 되는 날 이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투자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투자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특별해지)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2.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거주자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다. 공모부동산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라.「자본시장법 시행령」제 223 조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특별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여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 81 조의 4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